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추경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08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11.

발의자 : 추경호 · 김기현 · 정동만

권성동 · 이현승 · 김상훈

최수진 · 윤영석 · 배준영

성일종 · 권영진 · 김기웅

박수민 · 최은석 · 박성훈

김승수 의원(16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온실가스 배출권,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,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는 등 기후 · 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,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.

그러나 기후위기 예방 및 탄소중립 촉진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기후 · 환경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).

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제4호의2, 제5호, 제9호의2 및”을 “제4호의2 및”으로, “적용한다”를 “적용하며,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”로 한다.

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각각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② ~ ⑤ (생 략) 제108조(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 례)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 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<u>2025년</u> <u>12월 31일</u> 까지, 중고자동차를 <u>2</u> <u>025년 12월 31일</u> 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 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을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 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. 1. · 2. (생 략) ② · ③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108조(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 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8년 1</u> <u>2월 31일</u> ----- <u>2</u> <u>028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· 2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